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533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길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94,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94,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C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임야 10,7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인천 남동구 E 임야 2,8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인천 남동구 F 임야 2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4. 24. H에게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9.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9.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중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 받았다.

라. 피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9. 8.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J)이 내려졌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 C에게 47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020. 12. 14. 배당절차에서 위 C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 48,899,088원을 배당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피고는 2021. 8. 24.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민법 제368조의 제2항에 의한 대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근저당권대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대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20. 7.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1. 10. 2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2. 2. 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 10. 26.경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8780호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18. 이 사건 대여금이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 모두 변제되어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0194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대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31. 이 사건 대여금이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 모두 변제되어 이 사건 제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대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2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대위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공탁금 중

48,994,399원, 변제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8,994,399원 및 제1선행소송의 소제기시인 2021. 10. 26.부터 약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4. 25. 기준으로 피고가 H에게 빌려 준 대여금은 이 사건 대여금 2억 2,000만 원 외에 추가 대여금 2억 4,500만 원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동안 변제 내지 공탁하거나 피고가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1. 10. 25. 기준 52,982,295원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 모두 변제충당되어 소멸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60,000,000원 중 변제충당된 11,005,601원(= 1,888,387원 + 9,117,214원)을 제외한 48,994,399원과 원고가 2020. 7. 16. 변제한 10,000,000원¹⁾ 합계 58,994,39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994,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을 제1호증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2014. 4. 2.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H가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을 제7호증 차용금 증서에는 H가 2019. 1. 24. 피고에게서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그 무렵 60,000,000원을 H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을 제4호증 차용금약정서에는 ‘H는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금원 중 기존채무 이자 70,000,000원을 공제하고 17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금과 위 245,000,000원을 합하면 원금만 465,000,000원인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설정한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면 I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상당액을 대위변제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면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3근저당권만 설정 받은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2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별도로 2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994,3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명확히 안 것으로 보이는 제1선행판결의 확정일인 2023.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민법 제749조2) 제2항에 의하여 제1선행소송의 소 제기시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의미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별지

[illegible]

1) 원고가 위 돈보다 나중에 공탁한 금원으로 변제충당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

2)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